

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의7] <신설 2022. 12. 14.>

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(제24조의3 관련)

1.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

가.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

- 1) 방진마스크 2급 이상
- 2)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
- 3) 화학물질용 안전장갑
- 4) 흡착포, 흡착제 및 삽

나.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

- 1)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의 장갑
- 2) 흡착포, 흡착제 및 삽

2.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

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: 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에 해당하는 것

나. 가목에 따른 원제 외의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: 제1호나목1) 및 2)에 해당하는 것